

15.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개정령

대통령령 제16,067호 1998. 12. 31

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중개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를 위한 합동사무소의 설치시 3인이상의 중개업자 확보의무,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규약의 제도의무 및 합동사무소의 설치신고의무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.

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주택회보